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소병훈·백승아·문정복

정성호 • 안태준 • 어기구

박 정・정준호・박희승

안호영 · 김교흥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, 출산 가구의 대부분(78.1%)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.

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 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,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 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 용을 추가한 임신·출산·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 7제2항, 제23조의2,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). 법률 제 호

##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의20제1항 중 "평가할 수 있다"를 "매년 평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공표할 수 있다"를 "공표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, 정 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 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·보유·이용·제공·연계할 수 있다.
  - 1.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

- 2.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
- 3.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
- 4.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
- 5.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
- 6.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
- 7.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
- 8.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
- 9.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
- 10.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
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산후조 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

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·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·이용할 수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·정보를 취득하여 관리·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	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
조리원 설치) ① (생 략)	조리원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
	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・
	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15조의20(산후조리원 평가) ①	제15조의20(산후조리원 평가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	
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	
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	
·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	
문성 등을 <u>평가할 수 있다</u> .	<u>매년 평가하여야 한다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③
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	
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<u>공표할 수 있다</u> .	<u>공표하여야 한다</u> 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3조의2(임신・출산・산후조리
	통합시스템 구축 운영) ① 보
	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
	임신・출산・산후조리 관련 정
	보의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

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 아 수집·보유·이용·제공· 연계할 수 있다.
-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
  에 관한 정보
- 2.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
- 3.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정보
- 4.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
- 5.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 의료센터에 관한 정보
- <u>6</u>.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

-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
- 7.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 상담센터에 관한 정보
- 8.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 한 정보
- 9.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
- 10.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
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 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양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·출산·산후조리 관련

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 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 용할 수 있다.
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 ·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・이용할수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의 전 과정 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.
-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

제2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·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 ·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・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⑧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6조(벌칙) ① -----1. ~ 3. (생략) 4.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 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

<u>자에게 제공·누설한 자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